장애인 취업 · 창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 · 창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장애인이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및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취업 · 창업 1
1.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4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4
1.1.1. 장애인의 개념 4
1.1.2. 장애인 등록 5
1.1.3. 국가유공자 등록 9
2. 장애인 취업 13
2.1. 취업 전 지원 13
2.1.1. 직업지도 13
2.1.2. 직업적응훈련 14
2.1.3. 직업능력개발훈련 15
2.1.4. 취업알선 16
2.2. 취업 후 지원 19
2.2.1. 적응지도 19
2.2.2. 근로지원인 지원 20
2.2.3. 보조공학기기 지원 22
2.3. 권리 구제 24
2.3.1.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24
3. 장애인 창업 27
3.1. 창업 지원 27
3.1.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27

1.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1.1.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소개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취업	▪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적응지도 ▪ 근로지원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 창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건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 교육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지원

1.1.2. 장애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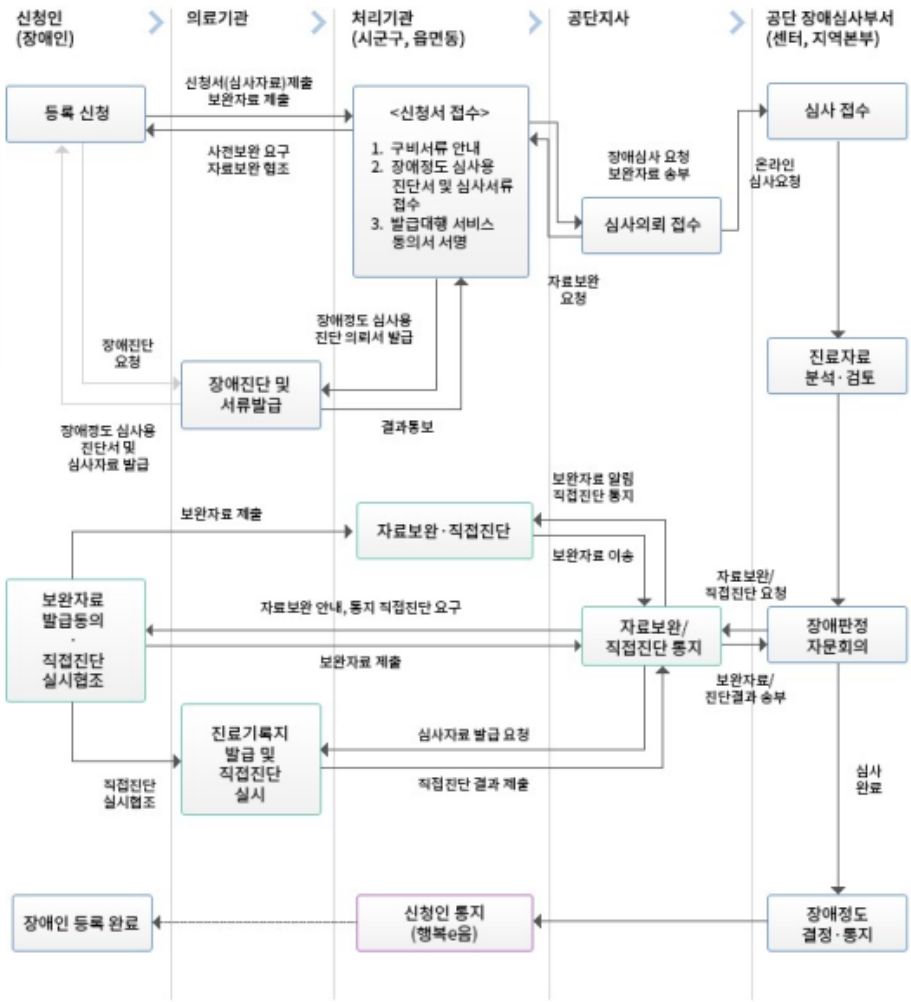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등록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 정책>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2).

▪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구분	내용
재발급 사유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6항).

-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

  ※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금융카드형 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시 위의 신청서 제출 면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가능
유효기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구분	내용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변경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정도 조정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시·군·구청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3.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다음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1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제12호·제13호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제출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개별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제출기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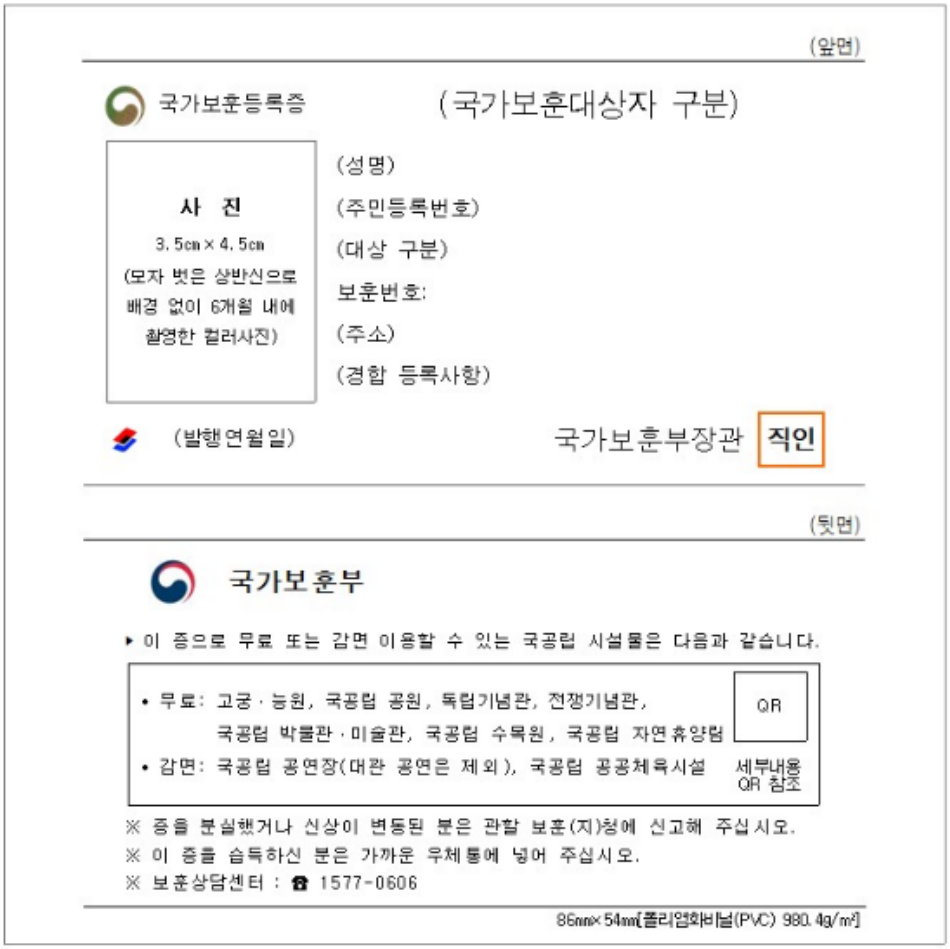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출처 : 국가보훈부 – 예우보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신청>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을 발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앞면)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함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고궁·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QR
세부내용 QR 참조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86mm×54mm[폴리염화비닐(PVC) 980.4g/m²]

- ※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 예우보상 – 국가유공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취업

2.1. 취업 전 지원

2.1.1. 직업지도

직업지도

"직업지도"란?

▪ “직업지도”란 장애인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제1항).

▪ 장애인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직업상담

▪ “직업상담”이란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1호).

▪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은 다음의 기관에서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5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자치단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 안마수련기관

※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 없이 직업상담 및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직업능력평가

▪ “직업능력평가”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영역	주요평가내용	평가방법
면접조사평가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면담
신체능력평가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관찰, 측정 등
사회심리기능평가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심리검사, 관찰, 면담 등
작업기능평가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의료평가	분야별 전문의 진단	의료기관 의뢰

▪ 직업능력평가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직업능력평가 참조).

평가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다만, 5인 이상 단체 평가 신청 시 공문으로 신청
접수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와 평가목적 및 일정 등을 협의
평가실시	가장 가까운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방법: 개별 혹은 소집단 평가 √ 평가 소요시간: 평가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평균 3~4시간 √ 평가비용: 전액무료
결과통보	평가실시 직후 평가결과를 설명들을 수 있고, 요청 시 7일 이내 평가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직업심리검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 지원-온라인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1.2.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이란?

▪ "직업적응훈련"이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직업적응훈련기관

▪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훈련수당

▪ 장애인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4항).

2.1.3.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

훈련대상자

▪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본문).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하며, 1학년·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특별과정에 한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단서).

훈련생 선발

▪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1항).

▪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2항).

▪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2항).

▪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항).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함)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2호).

2.1.4. 취업알선

장애인 취업알선

구직 등록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1항).

>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 장애인고용포털

- 구직장애인 및 사업주는 장애인고용포털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 구직장애인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온라인구인구직>

▹ 사업주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온라인구인구직>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4호).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고용

▪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5호, 제13조, 별표 1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과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및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1명당 1일 19,340원) 및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절차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고용알선>

※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중증장애인 인턴제

▪ “장애인 인턴제”란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인턴참여자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및 시각)
	대상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약정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근무조건	▪ 인턴은 「근로기준법」 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 ▪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2.2. 취업 후 지원

2.2.1.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적응지도란?

▪ “적응지도”란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하는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1항 참조).

적응지도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적응지도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30일이 경과해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2항 후단).

> ※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2.2.2.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이란?

▪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제43조, 제44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지원기간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	
지원예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장애인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언어장애인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지원 신청 및 처리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절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지원 결정 취소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1항).

-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단서).

2.2.3.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11호 참조).

▪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2026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명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공무원
지원조건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근로관계 유지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5)
지원내용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 1명당 2,000만원)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지원 신청 및 처리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3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

2.3. 권리 구제

2.3.1.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차별금지

사업주의 차별금지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4항).

구분	내용
채용 등의 차별금지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직무배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장애여성 차별금지	▪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정당한 편의제공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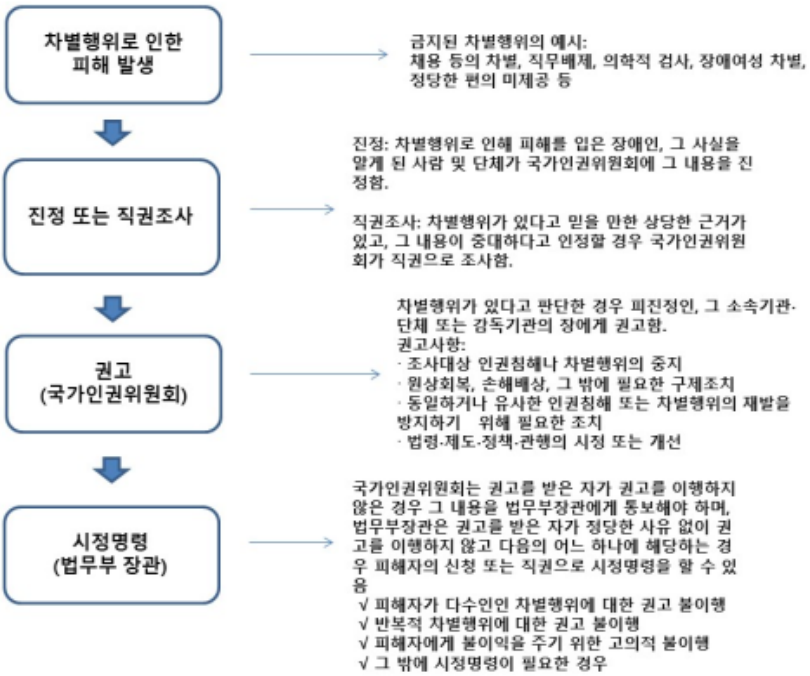
노동조합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차별 시 권리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금지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구제조치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손해배상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3. 장애인 창업

3.1. 창업 지원

3.1.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지원내용

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판로지원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분	내용
대상자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 내용	·입찰정보제공 √ 전국 발주처의 입찰정보(물품, 공사 및 용역)를 이메일, sms로 실시간 안내 √ 모바일을 통해 입·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입찰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 지원 √ 입점 업체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판로기술지원–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고, 장애인 창업자의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 내용	√ **일반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재기교육 등)** √ **특화교육** **(장애인 특화 업종 및 분야를 선정한 다음 해당분야의 전문적기술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게 초기단계 기술비용(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지원 내용</th><th>정부지원금</th></tr>
<tr><td rowspan="2">시제품 제작지원</td><td>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에게 제품디자인개발 및 시제품모형제작비용 지원</td><td>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천5백만원 한도)</td></tr>
<tr><td>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이나 Mock-up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td><td>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천5백만원 한도)</td></tr>
</table>
</td></tr>
</table>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판로기술지원-시제품 제작지원>

※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pply.debc.or.kr/k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